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03.16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2021.03.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2021.03.16 신설)

2.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03.16 항변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5.04 제목개정)]

④ 법 제81조의11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1.05.04 신설)

☞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①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1.03.16 개정)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2021.03.16 개정)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2021.03.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2021.03.16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항(반기별납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2.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021.03.16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21.03.16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1.03.16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03.16 항변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3.16 항변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⑪ 법 제75조의7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2021.05.04 신설)